

[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.07.16.(목) 이후 발행 분에 한합니다.]

당첨자 발표	자격확인 서류검수(5일간)	정당계약일
2026년 8월 4일 화요일	2026년 8월 7일 금요일 ~ 2026년 8월 11일 화요일(10:00 ~ 17:00)	2026년 8월 18일 화요일 ~ 2026년 8월 20일 목요일(10:00 ~ 16:00)

■ 당첨자 자격확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/ 서약서	본인	·견본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
	○		신분증	본인	·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발급구분 : 본인발급, 용도 :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·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(오라인발급)는 제출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·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발급)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발급)	본인	·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	본인	·기록대조일 : 시작일 [본인 생년월일] - 종료일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16.]로 발급 ·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'예'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여부 '예'로 설정하여 발급 ·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·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·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, 재직증명서 ·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※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 모 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	·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·기록대조일 : 시작일 [본인 생년월일] - 종료일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16.]로 발급 ·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'예'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여부 '예'로 설정하여 발급 ※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본인 및 세대원	·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인입
가점제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·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○	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배우자	·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영 선택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○		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·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존·비속	·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·직계존·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·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·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·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·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	피부양 직계비속	·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존속	·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·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3년간의 내역)
	○			피부양 직계비속	·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·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·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※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위임장	청약자	·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·용도 :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: 위임용(청약자 본인 발급용)) ·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·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(오라인발급)는 제출 불가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인감증명서와 대조, 위임장 날인
	○	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·'소형·저가주택 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 소명서류	해당주택	·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